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3
----------	-----

2022. 1. 26.(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월 21일

-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위 치 : 청주시 소재
-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2024.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사 업 비 : 382,396천원(국비 305,916^{80%}, 도비 76,480^{20%})*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 근거

- (인건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 36,765천원 × 6명 = 220,590천원
- (사업비)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주거비, 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월300천원 × 40명 × 12월 = 144,000천원

- (운영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사무운영비 등 6명 × 연2,968천원 ≒ 17,806천원

- 시설내역 :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 설치 및 인력 채용
 - (시설)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 확보
 - (종사자) 자립지원 전문가 6명

○ 위탁사무

- 보호~보호종료 전체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5년 이내)
-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주기적상담, 시설연계 및 자립교육
- 바람개비서포터즈(자조모임) 운영 :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자조역량 강화
-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¹⁰원 : 상담·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
-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0)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내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의 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본 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¹¹⁾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제4조의2¹²⁾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1)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 기관의 주요 사무는, 아동의 보호~ 보호종료 전체 단계에서의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 자조역량 강화,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슈퍼비전 제공 등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기관을 설치·운영 중인 8개 시·도 모두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함.
- 「아동복지법」 제40조¹³⁾에도 본 기관의 설치·운영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기관은 사업 내용의 전문성 요구,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2)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13)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현황('21. 12월)**

(단위 : 명, 천원)

구분	운영방식	운영주체	예산액
• 기설치 : 8개 / `22년 설치(예정) : 9개			
서울	민간위탁	서울아동복지협회	451,049
부산	민간위탁	부산아동복지협회	538,734
경기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491,810
강원	민간위탁	강원도아동복지협회	410,000
충남	민간위탁	충남아동복지협회	247,760
전남	민간위탁	전남아동복지협회	150,000
경북	민간위탁	경북아동복지협회	70,000
제주	민간위탁	제주아동복지협회	75,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3
----------	-----

제출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위 치 : 청주시 소재
-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2024.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사업비 : 382,396천원(국비 305,916^{80%}, 도비 76,480^{20%})*
 -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 근거
 - (인건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 36,765천원 × 6명 = 220,590천원
 - (사업비)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주거비, 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월300천원 × 40명 × 12월 = 144,000천원
 - (운영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사무운영비 등 6명 × 연2,968천원 = 17,806천원
- 시설내역 :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실 설치 및 인력 채용
 - (시설)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 확보
 - (종사자) 자립지원 전문가 6명

○ 위탁사무

- 보호~보호종료 전체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5년 이내)
 -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주기적상담, 시설연계 및 자립교육
 - 바람개비서포터즈(자조모임) 운영 :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자조역량 강화
 -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원 : 상담 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
 -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별첨)

3. 관계법령 : 붙임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I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보호종료아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책 발표(6대 추진과제, '21. 7.)

II 위탁개요

- 위 치 : 청주시 소재
- 위탁범위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2024. 12. 31.
- 위탁기관 :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사업비 : 382,396천원(국비 80%, 도비 20%) * 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사무
 - 보호~보호종료 전체 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5년 이내)
 -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주기적상담, 시설연계 및 자립교육
 - 바람개비서포터즈(자조모임) 운영: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자조역량 강화
 -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원 : 상담·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
 -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III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22. 1월
② 의회보고	• 민간위탁 의회보고(1월 임시회기 중)	'22. 1월
③ 수탁방법	• 수탁기관 모집 - 방법 : 공개모집(공고 15일) - 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22. 2~3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22. 3~4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22. 5~6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22. 6~7월

IV 세부추진계획

1 의회보고

- 동의시기 : '22. 1월 임시회기 중
- 동의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①항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①항 >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 동의 받아야한다.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2. 2월(15일간)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정(고득점자 선정)
- 신청자격
 -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포함)를 둔 비영리법인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
 - ※ 수탁 선정 후 발견 시에는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조건
 - 관계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추진中 : '20 ~ '22(사례관리사 1명)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22. 3 ~ 4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 ~ 9명정도(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복지부 추천 1,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신청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 충실도 등
-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 수탁자 선정 : 최고 득점 기관 수탁관리자 선정
 - 1개 법인이 신청 시 추가 공모(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을 때 심의)
 - 단, 추가 공모에도 1개 법인만이 신청할 경우 그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 진행하고, 2개 이상의 법인이 신청하였다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모
 - 선정기관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선정
- 선정기준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 선정
 - ※ 1개 법인이 신청, 수탁기관 선정평가 시 위원별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선정

④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 시기 : '22. 5 ~ 6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I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2. 1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2. 2월(15일간)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2. 3 ~ 4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22. 5 ~ 6월
- 개소 준비 및 위·수탁사무 개시 : '22. 6 ~ 7월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4조의2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위탁기관 : 3년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2024. 12. 31.
- 위탁금액 : 382,396천원(국비 80%, 도비 20%)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기능 >

1. 보호~보호종료 전체 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5년이내)
2.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3. 바람개비서포터즈(자조모임) 운영 : 사회적지지체계구축, 자조역량 강화
4.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지원 : 상담·정보제공 및 슈퍼비전 실시
5. 기타 자립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비고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의 전문적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③ 경제적 효율성	○ 수요대비 적정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운영할 예정이며, 수탁법인이 자립지원전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설치비 절감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아동 분야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전문화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지휘·감독)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보호아동·보호종료아동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 아동양육시설, 아동그룹홈, 가정양육 등 아동 복지시설과 지역자원을 연계 조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수반된 전담기관이 필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 필수(민간영역 서비스 제공 한계)	

□ 검토결과 : 적정

-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근거한 기관으로,
 -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 마련 및 아동보호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
 -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호종료아동 사례관리 등 전문 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관련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연계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도 증대
- ⇒ **사업내용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심의 : '22. 1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2. 2월(15일간)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2. 3 ~ 4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22. 5 ~ 6월
- 개소 준비 및 위.수탁사무 개시 : '22. 6 ~ 7월